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규정 마련 등〉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85호)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26호)
-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28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개요	1
【이해식의원안】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용혜인의원안】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권칠승의원안】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 검토의견	5
1. 2차 가해 금지의무 및 처벌 근거 신설 등(이해식의원안)	5
2. 조사위원회 감정인 선서 규정 신설 등(이해식의원안)	10
3.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조사개시결정 후 징계 및 문책사유 시효 정지(용혜인의원안)	14
4. 배·보상 관련 규정 마련 : 심의위원회의 배·보상 관련 업무 수행 또는 심의 의결 근거 신설(용혜인의원안·권칠승의원안)	19
5. 배·보상 관련 규정 마련 : 배·보상의 대상 신설(용혜인의원안·권칠승의원안) ..	26

6. 배·보상 관련 규정 마련 : 배·보상 세부 절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신설(이해식의원안·용혜인의원안·권칠승의원안)	33
7. 피해자 인정·지원금 등 지급 신청기한 연장(이해식의원안·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46
8. 치유휴직 신청기한 및 휴직기간 연장(이해식의원안·용혜인의원안)	51
9. 장기 추적 연구 시행 및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마련(이해식의원안)	54

I. 개 요

【이해식의원안】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3인
- (2) 제안연월일 : 2025. 8. 14.
- (3) 회부연월일 : 2025. 8.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2024년 5월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9월 조사위원회 출범, 2025년 6월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임.

그런데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가 행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의뢰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때 그 결과의 진실성 확보가 필요하며, 치유희직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용혜인의원안】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14인
- (2) 제안연월일 : 2025. 8. 22.
- (3) 회부연월일 : 2025. 8.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초로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참사 발생 2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17일에야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짐.

현재 10·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조사 지연으로 인해 향후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정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대규모 인재라는 이번 참사의 특성상 조사대상 공무원이 징계시효가 만료되길 기대하며 남은 기간 조사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참사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시켜 진상규명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손실의 배·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권칠승의원안】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권칠승의원 등 14인
- (2) 제안연월일 : 2025. 9. 12.
- (3) 회부연월일 : 2025. 9.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2024년 5월 제정·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조사위원회 출범하였고, 2025년 6월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10·29이태원참사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II. 검토의견

1. 2차 가해 금지의무 및 처벌 근거 신설 등(이해식의원안)

개정안은 10·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하면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안 제3조의2 및 안 제79조제1항),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2차 가해 방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0·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 ----- ----- ----- ----- 이 경우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9조(벌칙)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제7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현행	개정안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 ----. 1. 제3조의2를 위반하여 10·29이 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 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 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 는 행위를 한 사람
<u><신 설></u>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 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 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사회적 참사와 그 참사로 인한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과 허위정보의 유포 등 2차 가해는 참사 이후에도 희생자의 유가족 및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더 키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¹⁾.

따라서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2차 가해를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국가에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적·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2차 가해로 경찰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안은 43건임.

다만, 유사 입법례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와 비교]

구 분	개정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차 가해 금지 의무	O	X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O	O ²⁾
2차 가해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O	X

첫째, 2차 가해 방지 조문 신설과 관련(안 제3조의2)하여, 개정안은 2차 가해 방지 조문 하에 2차 가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유사 입법례에서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해당 조문 하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차 가해 방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2차 가해를 금지하는 의무를 내용으로 할 것인지, 2차 가해를 방지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할 것인지, 일반적인 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모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2차 가해 방지) ① 국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 ②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2차 가해 금지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안 제79조제1항)하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현행법으로도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칙 조항이 삭제된 바 있음.

[다른 사회적 참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형벌]

구 분	개정안	다른 사회적 참사의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적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 유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료 : 행정안전부)

개정안과 같이 벌칙 조항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2차 가해 방지 조문의 신설과 연계하여, 다른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차 가해 금지 의무의 신설,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관련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공감하나, 벌칙 조항의 신설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조사위원회 감정인 선서 규정 신설 등(이해식의원안)

개정안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감정 의뢰 시 감정인의 선서 또는 선서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28조제9항),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국가기관등에 부여하며(안 제40조의2),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조사의 방법) ① ~ ⑧ (생략) <u><신 설></u>	제28조(조사의 방법)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40조의2(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u> 국가기관등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u><신 설></u>	<u>제42조의2(포상) ①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조사위원회가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³⁾으로 조사를 수행할 시 감정인의 선서 또는 선서서 제출 규정을 도입하여 그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기관등의 협조 의무를 통해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포상금 지급은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가 입법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해당 신고 및 고발 행위를 심사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까지 발생하는 행정적·절차적 비용보다 해당 신고 및 고발 행위

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상금 지급 기관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신고 및 고발 행위가 무엇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포상금 지급 관련 유사 입법례에서는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 행위를 일정한 유형은 법률에서 열거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포상금 지급 관련 유사 입법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u>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조세포탈 행위 2. 무자료 거래, 이중장부 작성 등 탈세행위 3. 그 밖에 조세의 부과·징수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u>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3. 보험료 부과·징수 또는 보험급여 지급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기여를 한 행위

따라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가 어느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인지를 법률에서 몇 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대상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3.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조사개시결정 후 징계 및 문책사유 시효 정지(용혜인의원안)

개정안은 10·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시키고(안 제32조의2),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의 통보일로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한편, 징계 또는 문책 절차 진행의 정지로 만료되거나 잔여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남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을 종합보고서 권고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의제하여 그 시효를 정지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2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10·29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u>
<u><신 설></u>	<u>제32조의3(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조사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때와 조사를 종료한 때,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사대상 기관·시설·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의</u>

현행	개정안
	<u>통보를 받은 기관·시설·단체의 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시설·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권고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u>

현행법은 2024년 5월 21일 시행되었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조사위원회 구성의 지연 등으로 2025년 6월 17일에 이르러서야 첫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시기적으로 참사 관련 범죄혐의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법적·행정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10·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함으로써 관련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개시 결정의 통보를 받은 기관·시설·단체의

장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종합보고서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아, 징계 또는 문책 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공소시효의 정지와 관련(안 제32조의2)하여, 개정안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의 공소시효 정지를 통해 확보하려는 구체적 타당성과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인 법적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⁴⁾, 공소시효의 정지 기간이 위원회의 의결에 의존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측면과

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벌권 실현의 적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⁵⁾.

둘째, 징계 또는 문책 절차의 진행 및 그 사유의 시효 정지와 관련 (안 제32조의3)하여, 공소시효의 정지와 유사한 관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시효 제도의 취지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 실현이라는 입법 목적 등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은 조사대상 공무원이 징계 사유의 시효 만료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사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사유의 시효를 3년이나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패 관련 비위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면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⁶⁾.

이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징계권

5)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적용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국민의 법감정, 사회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범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재 95헌마 8, 1995.7.21./헌재 2003헌마 873, 2003.12.23.)

6)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행사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하여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보임.

이와 달리 개정안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의 시효 기산일을 ‘종합보고서 권고를 통보 받은 날’로 규정하여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에 따라 기산일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징계 또는 문책 절차의 진행 및 그 사유의 시효 정지와 관련하여 각각의 정지 요건 및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배·보상 관련 규정 마련 : 심의위원회의 배·보상 관련 업무 수행 또는 심의 의결 근거 신설(용혜인의원안·권칠승의원안)

개정안은 현행법의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사항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용혜인의원안 제50조 및 제50조의2, 권칠승의원안 제50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배·보상 업무 및 피해자 구제·지원 등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며(용혜인의원안 제51조제1항),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권칠승의원안 제51조제1항).

현행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과 ----- ----- ----- ----- ----- ----- ----- -----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용해인원안	권철승의원안
<u><신설></u>		4. 제52조의2에 따른 배상금 및 위로지원 금에 관한 사항
<u><신설></u>		5. 제52조의3에 따른 손실의 보상 등에 관 한 사항
<u><신설></u>		6. 제52조의6에 따른 임시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5. (생략)		7. 8.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u><신설></u>	제50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 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 한 피해조사, 피해구 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50조의3에 따른	

현행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u>배상금 및 위로지원</u> <u>금에 관한 사항</u> 5. <u>제50조의4에 따른</u> <u>손실의 보상 등에 관</u> <u>한 사항</u> 6. <u>제53조의4에 따른</u> <u>임시지급 및 정산에</u> <u>관한 사항</u> 7. <u>심의위원회 운영에</u> <u>관한 규칙의 제정·</u> <u>개정에 관한 사항</u> 8. <u>그 밖에 이 법의 목</u> <u>적 실현을 위하여 심</u> <u>의위원회가 필요하다</u> <u>고 판단하는 사항</u>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 ----- ----- ----- ----- -----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15명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u>생활지원, 의료지원,</u> <u>심리상담 및 심리치</u>	3. <u>배상·보상 업무 및</u> <u>피해자 구제·지원</u> ---	3. (현행과 같음)

현행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4.·5. (생략) ② ~ ⑤ (생략)	----- ----- ----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가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⁷⁾하고 있으면서도 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실제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배상 및 보상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⁸⁾.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8) 2025.10.14. 기준 10·29이태원참사 배·보상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은 희생자의 유가족이 대한민국과 용산구를 피고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1건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동 위원회에 배·보상 등을 신청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심의위원회 개요]

구분	주요내용	비고
소속	▸ 국무총리 소속	구성일 '25.2.26
구성	▸ 9명 (진상규명·인권 등 분야별 전문가 6,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회의 실적	▸ 총 9회 개최 ▸ 종전 피해자 확정, 피해자 신규 신청건 263건 심사,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및 고용유지비용 의결 등	25.10.14.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다만, 각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가 배·보상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배상·보상 업무의 법리적 판단과 손해 사정 등 전문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⁹⁾.

9) 다만, 별도의 배·보상 업무 전담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 부칙에 관련 조항의 시행일을 유예하고,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심의위원회 관련 개정안의 비교]

구 분	용해인의원안	권철승의원안
목적	<현행> +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현행> +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기능	<현행> +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손실보상, 임시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의 <u>심의·의결 기능 추가</u>	<현행> +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손실보상, 임시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u>업무 수행 범위에 추가</u>
구성	< <u>위원 자격 수정</u> > 생활지원 등 전문가 → 배상·보상업무 및 피해자 구제·지원 전문가	< <u>위원 정수 수정</u> > 9인 → 15인

4·16세월호참사의 경우 법률에 의해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지원·추모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 바 있는데,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경우 법조인과 배·보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의결하는 조직으로 기능한 바 있음¹⁰⁾.

[세월호 지원 관련 위원회 현황]

구 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지원·추모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국무총리
구성	15명(위원장 : 총리가 임명)	18명(위원장 : 국조실장)
지원조직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현재)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소속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조직(인력)	3과 1팀(28명)	2과 1팀(16명)

(자료 : 행정안전부)

10) 4·16세월호참사의 경우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같이 피해자 인정 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하는 조직은 설치·운영된 바 없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피해구제심의회에 다수의 피해자 인정 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업무까지 수행한다면 심의안건 증가로 기존 피해자 인정과 관련된 심의 및 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배·보상 심의·의결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며,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사례와 같이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할 조직 구성의 근거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5. 배·보상 관련 규정 마련 : 배·보상의 대상 신설(용혜인의원안·권칠승의원안)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배상금의 범위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용혜인의원안 제50조의3, 권칠승의원안 제52조의2)과 손실보상의 대상(용혜인의원안 제50조의4, 권칠승의원안 제52조의3)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신설>	제50조의3(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 변제하는 손해배상금	

현행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신설>	상당의 금원 ② 국가는 「민법」 제 469조제1항에 따라 제 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0조의4(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와	

현행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신설>	관련된 구조 및 수습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현행	용혜인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신설>		② 국가는 「민법」 제 469조제1항에 따라 제 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2조의3(손실의 보상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와

현행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u>관련된 구조 및 수습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사람</u>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상금 등의 지급 대상과 손실보상의 대상은 피해자가 되어야 할 것임¹¹⁾).

[현행법에 따른 피해자의 범위]

구분	피해자 유형
유가족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2) 참사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1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이에 개정안은 배상금의 범위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화하여 피해자의 권리 실현 및 구제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지급 대상 관련 개정안의 비교]

구 분	용혜인의원안	권철승의원안
배상금의 범위	1)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위 1)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 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좌 동
위로지원금 지급대상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u>심의위원회</u> 에서 정함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u>조사위원회</u> 에서 정함
손실보상 대상	1)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직 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사람	좌 동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각 개정안은 피해자를 위로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 하면서, 지급의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준 중 희생자와의 관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는 유가족과, 피해의 정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중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위로지원금은 손실보상과 그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과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은 손실보상의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하고, 위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각 개정안이 위로지원금 관련 업무의 수행이나 심의·의결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로지원금 지급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도 조사위원회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을 피해자로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세월호피해지원법」의 경우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을 희생자 유가족과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및 관련 가족으로 한정할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배·보상 관련 규정 마련 : 배·보상 세부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신설(이해식의원안·용혜인의원안·권칠승의원안)

개정안은 배·보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신청인의 지급 신청 등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참사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이해식의원안 제78조의2, 용혜인의원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6), 권칠승의원안 제52조의4부터 제52조의9).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신설>			제52조의4(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의5(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신설>			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2조의6(임시지급 및 정산)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배상금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신설>			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배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제52조의7(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국가는 제52조의2제3항의 지급결정 및 제52조의6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신설>			<u>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u> <u>제52조의8(부당이득의 환수) ①</u> <u>국가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u> <u>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u> <u>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u>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신설>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 를 반환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 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52조의9(소멸시 효에 관한 특 례) 10·29이태 원참사로 인하 여 발생한 피해 에 대한 손해배 상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의 관계 법령 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 해자를 안 날부 터 5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 로 소멸한다.
<신설>		제53조의2(신청인 의 동의와 배상 금 등의 지급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등) ① 배상금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 서 정본을 송달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 원금 및 보상금 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 의서를 첨부하 여 심의위원회 에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 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위로지 원금 및 보상금 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배 상금·위로지원 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 정 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제1항에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신설>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3(지급 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4(임시지급 및 정산)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신설>		<u>청 또는 직권으로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결정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u> <u>제53조의5(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52조제3항의 지급결정 및 제53조의4의 임시지급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u>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신설>		대위한다. 제53조의6(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신설>	제78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별)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및	세강제징수의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배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 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부터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의 완성으로 소 멸한다.		

배·보상 관련 세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¹²⁾과 다르게 특별법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은 배·보상을 신청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배·보상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렇듯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배·보상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12)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배·보상 세부절차 및 소멸시효 특례 관련 개정안의 비교]

구 분	이해식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권철승 의원안	비 고
신청인의 지급신청	X	O	O	배상금 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1년이 내에 지급 신청
지급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X	O	O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 하면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 성립
임시지급 및 정산	X	O	O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배상금의 일 부를 지급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X	O	O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지급한 한도에 서 국가가 대위행사
부당이득의 환수	X	O	O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등
소멸시효의 특례	O	X	O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다만, 사회적 참사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정한 유사 입법례를 고려
하면, 배상금 등을 신청하는 피해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배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로서 송달받아야 하는 결정서
정본과 관련하여 해당 서류의 송달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의 참조 규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 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피해자 인정 신청 및 배상금·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지원금(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 기한을 현행법보다 연장하려는 것임(이해식의원안·용혜인의원안·권칠승의원안 제52조).

– 46 –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 ----- -----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 ----- ----- ----- ----- ----- ----- ----- ----- ----- -----	② ----- ----- -----지원금 등----- ----- 제9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 ----- ----- ----- ----- ----- ----- ----- ----- ----- -----	② ----- -----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 ----- ----- ----- ----- ----- ----- ----- ----- ----- ----- -----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③ (현행과 같음)	③ ----- ----- ----- -----지 원금등----- -----. ----- -----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u>지원금액</u>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u>지원금등</u>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피해자 인정 신청과 동 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
금의 신청기한을 법 시행 이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¹³⁾, 현행법이

1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

2024년 5월 21일 시행되었으므로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2026년 5월 20일에 도래함.

그런데, 조사위원회의 첫 조사개시 결정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5년 6월 17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될 수도 있는 잠재적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기한의 이익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등의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과 연계하여 현행법보다 연장하려는 것으로 신청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의 비교]

구 분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신청기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범위	■ 피해자 인정 ■ 지원금(현행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 피해자 인정 ■ 배상금, 위로지원금, 보상금, 지원금	■ 피해자 인정 ■ 배상금, 위로지원금, 보상금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연장된 신청기한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내 또는 1년 이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등의 신청을 수용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피해자 인정 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보상 관련 규정의 도입을 전제하더라도 현행법 상 생활 지원금이나 의료지원금과 같은 지원금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등의 범위를 배상금, 위로지원금, 보상금,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조사위원회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추가피해 확인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 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등 신청기한이 동일함에 따라 피해자 인정 결정에 걸리는 시간(최대 6개월)을 고려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 근거만 법률에 마련하고 신청기한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8. 치유�휴직 신청기한 및 휴직기간 연장(이해식의원안·용혜인
의원안)

개정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면서, 의사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가 있는 경우 해당 기한을 추가적으로 연장하고(안 제60조제1항), 치유�휴직의 기간은 현행과 같이 6개월 이내로 유지하되, 의사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단서).

[illegible]

현행	이해식의원안	용혜인의원안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 다만, 의사의 소견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라 치유�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25명(2025.10.14. 기준)으로, 치유�휴직은 참사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5월 21일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추가적인 치유�휴직 수요를 접수할 수 없어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의사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추가적인 신청기한 및 치유�휴직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개정안의 비교]

구 분	이해식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치유휴직 신청기한	원칙	법 시행 후 2년	원칙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예외	법 시행 후 3년	예외	법 시행 후 3년
치유휴직 기간	원칙	6개월 이내	원칙	6개월 이내
	예외	6개월 이내에서 연장	예외	6개월 이내에서 연장

다만, 치유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정 결정을 먼저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과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인정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도과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피해자 인정 결정에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장기 추적 연구 시행 및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이해식의원안)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의 근거(안 제67조제3항), 피해자 등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이태원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안 제72조의2)를 각각 마련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 ② (생략) <u><신설></u>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72조의2(이태원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피해자와 이태원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이태원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태원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이태원트라우마센터의 설치·

현행	개정안
	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형 참사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등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예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가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 중에 있음¹⁴⁾.

개정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기 추적 연구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정신적 외상에 대해서는 전담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보다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현재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5개소) 및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263개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등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¹⁵⁾, 이러한 심리지원체계는 피해자의 다양한 소재지에 따른 접근

1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②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 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참사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외에 기존 트라우마센터의 인력 및 프로그램 확충 등 다른 대안을 함께 검토하여 피해자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며, 12·29여객기 참사의 경우에도 별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하지 않고 기존 심리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참사별 트라우마 센터 설치보다는,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및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기존 심리지원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